

#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8,467,544	5,654,026
일반회계	181,042,585	5,431,278
특별회계	7,424,959	222,749
기타특별회계	7,424,959	222,74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1,366	13,241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31,058	12,932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599,393	47,98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32,724	6,982
주차장 특별회계	4,656,762	139,703
기반시설 특별회계	63,656	1,91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77,46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